

감사

1. 목적

교회 회계장부 기록의 정확성을 검토한다.

2. 역할

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교회장부의 기록을 검토하고, 재무관리 이행의 정확성을 감독하고 감사한 결과를 보고한다.

3. 조직

2명의 감사로 구성된다.

4. 행사

- 1) 회계 장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회 회계가 바뀔 때나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의무적으로 감사한다.
- 2) 회계감사 결과를 소정 양식대로 구역회에 보고한다.
- 3) 재정에 관계된 서류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관케 한다.

5. 감사방침의 서면 규정

- 1) 재정위원회는 개체교회의 내부 감사를 위하여 그 방침을 서면으로 규정하여 놓아야 한다. 이 방침은 매년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재정위원회가 검토하여 구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¶258, 4 c)
- 2) 재정위원회는 개체교회 및 그 종속 기관의 모든 재무기록을 연례적으로 감사하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. (¶258, 4 d)

6. 교회 내부 감사

교회 내부 감사 (internal controls)란 재정보고와 그 장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일과,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장부를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일을 말한다. (¶258, 4 d)

7. 회계 감사의 범위

회계 감사는 재정 보고의 신빙성을 대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므로, 교회 자산이 잘 보호되어 있는지, 또한 지역의 국법과 개체교회의 방침과 절차, 그리고 '장장'의

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,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. (§258, 4 d)
회계감사는 재정위원회가 책임지고 이수하여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. (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). 회계 감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. (§258, 4 d)

- 1) 현금 및 투자가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일
- 2) 현재 서면으로 된 재무행정 방침과 절차를 잘 따르고 있는지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회 회계, 재무서기, 목사(들), 재정위원회 위원장, 교회관리인, 현금계수위원, 교회 서기 등과 면담하는 일
- 3) 각 현금 계좌와 투자 계좌의 분개장 (journal entries) 기록이 허락받은 수표 서명자의 것인지 확인하는 일
- 4) 기타 재정위원회가 위탁한 일들

8.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

- 1) 회계 감사는 교회 회계, 재무서기, 목사(들), 재정위원회 위원장, 교회 관리인, 현금계수위원, 교회 서기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나, 공인회계사, 회계전문회사, 이와 동등한 회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(§258, 4 d).
- 2) 감사는 교회 밖의 계리사나 공인회계사에 의뢰해도 되고, 교인 가운데 회계 장부를 감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맡겨도 좋다. (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)
- 3) 감사는 수입과 지출의 기록을 남기는 재무체제를 질적으로 향상 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사람이다. (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)
- 4) 장정은 회계감사 결과를 꼭 구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감리사에게 소정 양식을 얻어 그 양식대로 하면 된다. (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)

9. 감사의 횟수

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재무서기와 교회 회계가 바뀔 때마다,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. (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)